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 및 제17조제1항).

II. 검토의견

안 제16조의3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수행사업, 수익사업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5항에서는 협회의 법인격 부여 규정과 「민법」 준용 규정을 하나의 항에 병기하고 있는바, 사단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 근거 규정 직후에 법인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을 고려할 때, 법인격 부여 규정을 상항 배치하여 협회의 법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현행 개정안은 협회 설립의 핵심 절차인 정관에 대하여 장관의 인가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2항 후단에서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만 “또한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항에 정관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장관의 인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후단에 정관 변경 시의 준용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협회 설립 및 변경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적은 정관을 갖추어야</u>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10. (생략)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u>협회는 법인으로 하며</u>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협회는 법인으로 한다.</u> ③ <u>협회를</u>----- <u>각 호</u>-----<u>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u>----- -----. 1. ~ 10. (개정안과 같음) ④ -----<u>각 호</u>----- -----. 1. ~ 5.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⑥ <u>협회에 관하여</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